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424호

「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」 일부개정(안)

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항공안전 자율보고의 보고내용,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보고 대상자 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현행화하고, 보고기관 및 연락처 변경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항공안전 자율보고 내용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현행화(안 제2호)
- 나.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라 확대(안 제3호)
- 다.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보고기관 명칭 및 연락처를 현행화(안 제5호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항공안전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국토부  
항공안전정책과(☎ 044-201-4682, fax 044-201-5628)

○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(전화 : 044-201-468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